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제4조)
- 다. 기본계획 및 기초조사 (안 제5조~제6조)
- 라. 문화유산 정보화 촉진 및 보호활동 지원 (안 제7조~제8조)
- 마. 문화유산교육진흥 정책 추진 (안 제9조)
- 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안 제10조)
- 사. 문화유산돌봄사업 (안 제11조)
- 아. 협력체계, 재정지원 (안 제12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참조 : 의회사무국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5, 전화 : 02)3425-7382, FAX : 02)3425-7292, E-mail : gratia@gangdo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